

자사주 Clean-up 프로젝트

자기주식,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상법 · 세법 동시 대응

2026.03 상법 개정 시행

2026.08 세제 개편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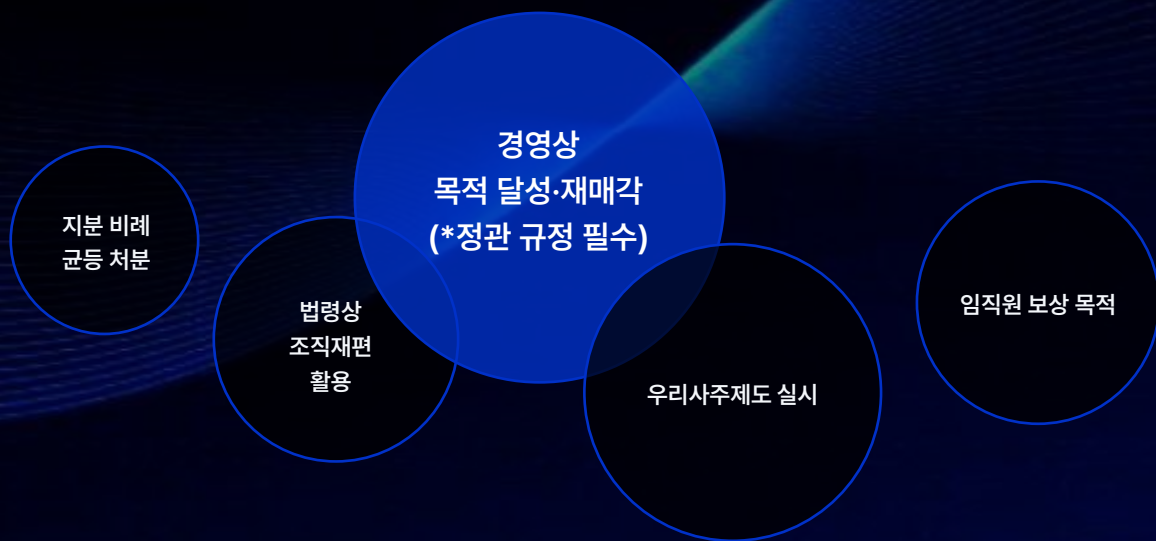
2027.01 자기주식 과세체계 전면 개편(예정)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분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유예:2027.9.5까지 소각 필수)

27년부터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 과세 적용"

소각의무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조건



올해 8월, 자기주식 관련 세제개편안 발의

AS-IS

~2026.12.31 취득분



소각 목적
→ 의제배당·종합과세
(최고 49.5%)



처분 목적
→ 양도소득세
(20~25%)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산입
→ 법인세 절감효과

TO-BE

2027.1.1 이후 취득분



취득 목적 불문, 취득 시점에
전면 **의제배당 과세**
(최고 49.5%)



이종과세 조정(Gross-up)은
이익소각 목적에만 적용,
재매각은 제외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비과세로 전환
처분 손실은 손금불산입

OUR APPROACH

세법 개정 전 자기주식 거래 완료 '소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 I

제거=사서 보유했다가, 낮은 세금으로 재매각

전체 스킴

1 자사주 보유 후 무액면주식 전환

회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해 둔 자기주식을 보유 후 전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2 무액면주식 증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 또는 제3자 배정으로 증자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수반됩니다.

3 가치 희석

신주 발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1주당 평가 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락(희석)하게 됩니다.

4 기존주주 자사주 재매입

상법 제418조를 준용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사주를 처분합니다.

5 제3자 자사주 매입

희석 과정을 거쳐 가치가 낮아진 자사주를 후계자 등 지정된 인원이 저렴한 가액으로 최종 재취득합니다.

제418조 제1항 준용: 자기주식 처분 시에도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가 그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

실무적 함의: 무액면 증자로 희석된 낮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기존 주주(후계자 등)가 지분 비례에 따라 회사 보유 자사주를 재매입-승계 지분 확보의 근거 조문으로 활용

OUR APPROACH

세법 개정 전 자기주식 거래 완료 '소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 II

제거=사서 보유했다가, 낮은 세금으로 재매각

자사주 보유 프로세스

01 예외 사유 특정

5가지 예외 사유(지분비례균등처분·임직원보상·우리사주·조직재편·경영상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안 되면 원칙(1년 내 소각)으로 돌아갑니다.

정관 근거 확인·정비

경영상 목적(제3자 배정 등)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이 단계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부터 선행해야 합니다.

02

03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작성

이사 전원이 서명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수량 •취득 방법 •발행주식 대비 비율 변화 •보유 기간 및 처분 예정 시점

주주총회 승인

정기(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통결의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정관 변경(2단계, 특별결의)과 계획 승인(4단계, 보통결의)을 같은 주총에 함께 상정하는 게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04

매년 갱신 승인

여기가 놓치기 쉬운 지점인데, 한 번 승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마다 계획을 다시 상정해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부결되면 그 시점부터 원칙(1년 내 소각)이 다시 작동합니다.

05

OUR APPROACH

세법 개정 전 자기주식 거래 완료 '소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 III

제거=사서 보유했다가, 낮은 세금으로 재매각

무액면주식 전환 및 증자

무액면주식은 액면가액을 표시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액면주식 증자에 참여합니다.

·주의사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으며, 도입 시 정관명시가 필수입니다.

《 무액면주식 전환 프로세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액면주식 조항을 삭제하고 무액면주식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주권제출공고 및 채권자 보호

기존 액면주권을 회수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주주에게 개별 통지



변경 등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무액면주식 신주발행(증자) 프로세스 》



이사회 결의

신주의 수와 발행가액을 정함



주금 납입

인수인이 배정된 주식의 주금을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입



증자 등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와 변경된 자본금을 등기

관련 조문 연결

제329조(무액면주식 발행) → 제451조(자본금계상) → 제342조(처분, 제417~432조 준용) → 제418조(지분비례 배정 원칙) 순으로 조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OUR APPROACH

세법 개정 전 자기주식 거래 완료 '소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 IV

제거=사서 보유했다가, 낮은 세금으로 재매각

가치 희석 후 재매각

제3자가 무액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주식을 희석하고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정교한 저가-대량 증자를 통해 주당 가치가 최저점으로 희석된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기존주주 또는 후계자 등 특정 특수관계인에게 재매각합니다.

《 가치 희석 》



원리

현저히 낮은 가격(저가)으로
신주를 대량 발행하면 1주당
가치는 무조건 희석



자기주식 가치의 동반 하락

자사주의 주당 평가액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됨



재무구조 통제

발행가액의 50%만 자본금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으로 분리

《 무액면주식 신주발행(증자) 프로세스 》



이사회 결의

처분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희석 후 시가), 처분
대상자 결의



자금 납입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양수인의 주식 매매 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주주명부 개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

주주명부 등재(개서) 후 양도일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0.35%)를 신고·납부

OUR APPROACH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후 무액면주식 증자를 통한 자사주 가치 희석 메커니즘

가상 예시

1 기존 주식구조

발행주식 10,000주
자사주 1,000주 (10%)
1주당 가치 100,000원
자사주 평가액 1억원

2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액면주식 전체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3 무액면 증자

신주 5,000주(주당 2만원)
발행주식 15,000주
1주당 약 73,333원(▼27%)
자사주 평가액 → 약 7,333만원

4 자기주식 재매각

기존 주주 재매각 또는 제3자 매각

《 핵심 매커니즘 》

무액면주식은 액면가 제약이 없어 저가·대량 제3자 배정 증자로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액도 함께 희석되어, 낮아진 가치를 기준으로 기존 주주(후계자 등)에게 재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상법 §342 (자기주식의 처분) 신주발행 규정(§418 등) 준용. 처분 시에도 기존 주주가 지분 비례로 우선 취득할 지위가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활용 예시

법인자금 인출	CEO의 가지급금 정리 재원으로 사용
- 법인자금 개인화 -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이외 추가로 인출	- 대표이사 지분 취득시 (매매목적, 과표 3억 이하) - 배우자 증여시 1년 보유 후 취득
CEO의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직원 스톡옵션 행사시 또는 배당금 지급
- 종신보험 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한 상속자 플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또는 현물배당 지급 가능

• 이익소각(자기주식소각)



01

감자소각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

02

이익소각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익소각)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주식 소각 종류

① 특정 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

②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기회)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자기주식소각 정관 규정

정관 샘플 제 00조 (주식의 소각)	상법 제 343조 (주식의 소각)
1.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익소각과 액면주식

• 선이익소각(액면이익소각)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사례

선이익 소각

자본금이 큰 기업(최소 2억원 이상)

방법

이익소각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액면가로 자기주식 취득

장점

양도차익 없음(세금 없음), 자본금 유지, 주식수↓ 미처분이익잉여금↓

기대효과

- 자본금이 크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싶은 기업
- 세 부담없이 기업의 현금자산을 개인화 시키고자 할 때
- 세 부담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할 때
- 외부감사대상 전 단계 기업이 자산을 감소시킬 때
- 기업상속공제 활용시 사업무관자산을 감소시킬 때

법적근거

• 주주간 증여의제 문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균등취득으로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산-329]

• 법인세 익금산입 문제

주식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 액면주식소각에 대한 국세청 입장

의제배당 과세 문제

[법인46012-2019] 이익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이익소각으로 위하여 주주가 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 초과금액 없으면 과세 안됨

주주간 증여의제 문제

[재산-32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감자 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익금산입 문제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법령해석과-4323] 주식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취득시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